대전광역시 대덕구

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| · 다. | 7 |
|---------|---|
| | |



http://www.daedeok.go.kr

선 기관(부서)의 장 람

제2023-67호 2023. 11. 15.(수)

차 례

공 고(1)

공

•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공람·공고(공고 제2023-1169호)

발항: 대전광역시 대덕구 / 편집: 기획홍보실(우: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(오정동) 🗈 608-6602)

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3-1169호

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공람·공고

대전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(예정지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기에 앞서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미리 주민 의 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·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11월 15일

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

1. 공람기간 : 2023. 11. 15. ~ 2023. 11. 29. (공고일로부터 14일간)

2. 공람장소 : 대전광역시 산업입지과, 대덕구 도시계획과

3. 주요내용

○ 제한지역 :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442번지 일원

○ 제한 면적 : 54,223 m²

○ 제한사유

- 사업예정지구 내 건축행위 등으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계획 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개발행 위허가의 제한 필요
- 예정 지역에 대한 계획적 관리와 부동산 투기 및 불필요한 외부자본의 유입 등 사회,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함
- 제한대상

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

- 건축물의 건축, 공작물의 설치, 토지의 형질변경, 토석의 채취, 토지 분할 및 물건의 적치 행위 등

- 제한 제외대상
 - 가. 개발행위 허가제한 공고의 시행일까지 허가를 받은 행위 및 동 공고의 시행일까지 허가신청이 접수된 것으로서 종래에는 행위허가가 가능한 행위
 - 나. 사업예정지구에 종전부터 입지한 기업체로 정상적인 생산 활동을 위해 필 요한 최소한의 행위
 - 다.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·옹벽 및 사방시설, 방재시설의 설치 등 사람과 동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
 - 라.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
 - 마. 이미 확정되었거나 협의된 도시계획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
- 제한기간 : 고시일로부터 3년(단, 제한기간 만료 이전에 관련 계획 수립 완료시 해제)
- 4. 관계도서 : 게재 생략(공람장소에 비치)
- 5.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:
 -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계획과(☎042-608-5105)
 - 대전광역시 산업입지과(☎042-270-3771) 끝.